2021년도 제3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o 일 시: 2021. 11. 29.(월요일), 10:30
-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대행),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449건(안건번호 제2021-168050 호~16993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68050호~168055호는 원저작물의 특정 장면을 편집하여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정권고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부결함.
 - 안건번호 제2021-168056호~168082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물 및 만화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전송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가결함.
 - 안건번호 제2021-168083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한 회차의 극히 일부 분량을 우리말로 아마추어 더빙하여 제공 중인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22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56회 저작권보 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34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4쪽 저작물명, 5쪽 게시물 제목, 저작물명 등 민원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비식별 처리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
- 참석 위원 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에도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건은 원안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ο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

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44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1-168050호~169933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안건번호 제2021-168050호는 국내 더빙 성우를 소개 및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성우 출연 부분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이용 중임. 안건번호 제2021-168051호~168055호는 원저작물 중 특정 인물의 전투 장면 등 특정 주제의 장면을 편집하여 이용 중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을 편집하여 게시하였으나, 원저작물의 일부를 단순히 잘라내어 이용하고 있을 뿐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음.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68050호~16805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이웃이나 서로이웃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나, 그것만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 및 해당 블로그가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B 위원: 블로그 소개를 보면 성우를 지망하는 사람으로 보임. 해당 블로그의 게시물은 성우 관련 리뷰가 주를 이룸. 해당 블로그에서 일부 광고 배너가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통상적인 ○○○ 블로그 운영방식의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의 영리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 C 위원: 기타 게시물이나 댓글 내용으로 보아 별도의 금전적인 거래 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D 위원: 원저작물의 특정 장면을 편집하여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A 위원: 원저작물을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편집하여 사용한 것으로, 일반적인 불법복제물 복제·전송 사안과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안임.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68050호~168055 호는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68056호~168082호는 블로그, 카페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영상물,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출판물 총 219건을 제공하고 있는사안임.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68056호~16808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안건번호 제2021-168058호~168059호는 심의일 현재 비공개 글로 전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기존 심의위원회 입장에 따르면 이웃공개, 서로이웃공개 등의 형태로 공개 범위가 변경되었을 뿐 현 시점에도 제공되고 있을 것이 예상되고, 언제든지 공개로 전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공개 게시물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님. 가결 의견임.
- B 위원, D 위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68056호~168082 호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 호 제2021-16808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 11분 16초 분량을 우리말 더빙하여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 중인 사안임. 해당 회차는 24분 분량으로, 그중 극히 일부인 약 1분 분량을 이용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 중인 회차의 경우 라프텔 등 합법 시장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하여 우리말 더빙판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 어 안건번호 제2021-16808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애니메이션 저작물을 이용한 부분은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 중이라고 할 것이나, 극히 적은 분량을 이용하고 있고, 영리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A 위원: 전문 성우가 아닌 자들이 각자의 녹음기기를 이용하여 더빙한 저작물이 전문적으로 제작된 합법 시장의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더불어 극히 일부 분량만을 이용 중인 사안으로, 그 자체로도 시장 대체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어려운부분이 있음. 부결 의견임.
- B 위원: 일본 애니메이션 한 회차의 극히 일부 분량을 우리말로 아마추어 더빙하여 제공 중인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부합하지 않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C 위원, D 위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68083호는 부 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68084호~169933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만화,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음악 'My Universe'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1-168206호는 Coldplay, BTS의 협업곡 My Universe를 포함한 2021. 11. 21.일자 인기곡 103곡 및 신곡 모음파일을 215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 (게임 '서브노티카: 빌로우 제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 번호 제2021-168264호는 9.4GB 용량의 게임 파일을 240포인트에 판 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1. 5. 14. 출시된 최신 게임으로, 합법 시장에서 31,000원에 이용 가능함.
 - (방송 'Show me the money 1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 번호 제2021-169780호는 2021. 10. 29. 방영된 최신 방송프로그램을 125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68084호~16993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 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68084호~169933 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68050호~168055호 및 제2021-168083호는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1-168056호~168082호 및 제2021-168084호~16993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이 2021년 제3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 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3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2. 14.

분과위원장 대행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